

#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꼭! 확인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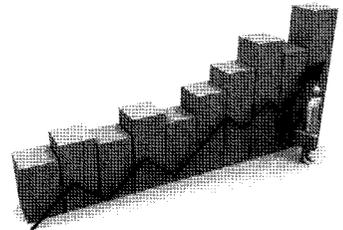
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발표

## 공통사항

### 가. 용자대상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용자제한업종(별표1)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(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)

※ 업종구분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



### 나. 용자한도 및 금리

#### ■ 용자한도

-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까지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)이며, 매출액의 150%이내에서 지원

※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: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(별표2)과 녹색·신성장동력 중소기업(별표3, 3-1)에 대한 시설자금, ② 협동화·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,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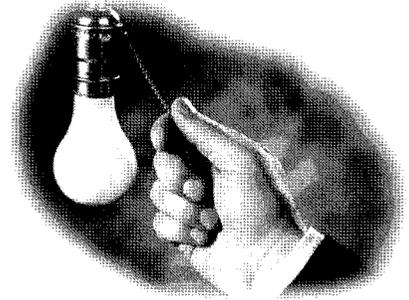
※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: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,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,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, ④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, ⑤ 업력 5년 미만 기업, ⑥ 창업을 준비 중인 자

#### ■ 대출금리

-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(이하 '공자기금'이라 한다)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\*되는 변동금리를 적용(기준

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)

- 분기별 대출금리(기준금리)는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'중진공'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bc.or.kr)에 공지
- ※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sf.go.kr) 공지사항 '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(융자계정) 변동금리 알림' 참조
- ※ 기업평가등급(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)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



#### 다. 융자 방식

- 중진공에서 융자신청·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(보증서 포함) 대출
-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주식·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(성장공유형 자금지원)

#### 라. 융자 절차

##### ■ 융자 신청·접수

- 중진공 지역본(지)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·접수

##### ■ 융자대상 결정 절차

- 진단·평가
  -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·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
  - ※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
  - ※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,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
- 융자대상 결정
  -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
  - ※ '09.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

##### ■ 자금대출

-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

■ 사후관리

-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
- ※ 대출자금의 용도의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



마. 용자제한 기업

-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-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⑤ 휴·폐업중인 기업. 다만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
- ⑥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+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
- ⑦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- ⑧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『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(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용자 대상으로 포함)
- ⑨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(별표9)을 초과하는 기업(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)
  - 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
    - 업력 5년 미만 기업,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
    - 「소득세법」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
    - 「중소기업 협동조합법」상의 협동조합
  - ※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&D투자비율이 1.5%이상인 기업의 R&D금액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
- ⑩ 제조업의 경우 『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무등록 공장
- ⑪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(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)

## 바. 용자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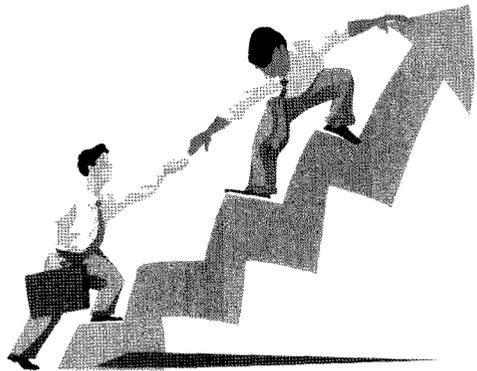
○ 2010. 1. 7 ~ 자금 소진시까지, 매월 구분 접수

※ 다만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,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피해기업,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 접수

## 개발 기술사업화 자금

### 가. 사업목적

○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


나. 용자규모 : 1,580억원

### 다. 신청대상

- 제조업, 지식서비스업(별표4), 제조관련서비스업(별표5)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,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-Biz기업
  - 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  -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
  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    - ※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
  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  - 『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』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  - 기업부설연구소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)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
### 라. 용자범위

- 시설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 등



마. 용자요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7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

**신 성장기반 자금**

가. 사업목적

-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

나. 용자규모 : 11,600억원

다. 신청대상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
  - ※ 단, 업력 7년 미만 기업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(별표4), 제조관련서비스업(별표5) 영위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
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  - ※ 협동화 및 협업 신청시 <1.공통사항> 마. 용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
-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「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」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
  - ※ 단,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용자

라. 용자범위

- 시설자금
 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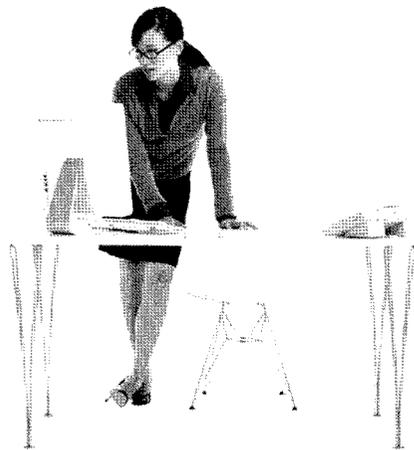
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  - ※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
- 기타 생산성 향상,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부지매입비, 조성공사비(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)
- 기업간 인수·합병계약에 의거 유·무형자산,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

## ■ 운전자금

-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40% 이내)
  - ※ 혁신형기업(별표2), 녹색·신성장동력 중소기업(별표3, 3-1), 지식서비스업(별표4), 제조관련서비스업(별표5)을 영위하는 기업, 협동화 승인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 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

## 마. 용자요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- ※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  - ※ 단,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
  - ※ 협동화 승인기업 : 추진주체 45억원(운전 5억원), 참가기업 40억원(운전 5억원)단,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(운전 30억원), 참가기업 30억원(운전 20억원)
  - ※ 협업 승인기업 : 추진주체 45억원(운전자금 5억원) 참가기업 4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




**긴급 경영 안정자금**

가. 사업목적

-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나. 용자규모 : 2,500억원

다. 신청대상

- 긴급경영안정사업,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
  - (긴급경영안정사업) 용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
  - (수출금융지원사업) 용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 자 하는 중소기업

라. 용자범위

■ 긴급경영안정사업

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(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 기업에 한함)
-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(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)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(재해중소기업)의 직접피해복구비용
-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  - ※ 일시적 경영애로기업
    - 금융기관의 Work-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
    -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,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, 중진공 집중관리기업,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(자산매각, 대주주 감자 등) 추진기업
    - KIKO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
    -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
    -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
    -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  - ※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, <1.공통사항> 마. 용자제한기업 ①항, ②항, ⑨항 적용에서 제외(단, ②항 중 금융 질서문란,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용자제한)

■ 수출금융지원사업

-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 확인서, O/A,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/O)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



마. 용자조건 및 방식

■ 긴급경영안정사업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
■ 수출금융지원사업

- 대출기간 : 180일 이내
  - 수출계약기준 :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
  - 수출실적기준 :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
- 대출한도 : 기업당 20억원 이내
  - 수출계약기준 :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%이내
  - 수출실적기준 :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/2 이내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- 용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진단·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, 순수비용, 보증서부(한국수출보험공사) 직접대출

〈신청·접수 및 문의처〉

지역 본(지)부	전화	지역 본(지)부	전화	지역 본(지)부	전화
서울(여의도)	02)769-6602	전남서부(무안)	061)280-8000	경기북부(고양)	031)920-6700
서울동남부	02)2156-2213	전남동부(순천)	061)724-1056	충북(청주)	043)230-6811
대구·경북	053)601-5300	대전·충남	042)866-0114	전북(전주)	063)210-9900
경북중서부	054)476-9314	충남북부(천안)	041)621-3687	경남(창원)	055)212-1350
경북동부(포항)	054)223-2041	인천	032)450-0521	강원(춘천)	033)259-7622
부산	051)630-7400	경기(수원)	031)259-7921	강원영동(강릉)	033)655-8870
광주·전남	062)600-3000	경기서부(시흥)	031)496-1083	울산	052)703-1100
제주	064)751-2054	경남서부(진주)	055)756-3060		